

의안번호	제 405 호
의결 연월일	2016. . . (제 회)

**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안**

발의자	박한범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5월 31일

#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

## 설치·운영 조례안

(박한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5월 31일

제 출 자 : 박한범, 박봉순, 박종규  
임병운, 장선배, 최병운  
박우양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)
  - 위원구성(15명 이내) : 의장(행정부지사), 부의장(위촉),  
당연직 위원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)
- 다.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, 여비 등 지급규정 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 - 25 호

라. 협의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검토

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는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·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
2.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(이하 “지역인재“라 한다)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
3.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
4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협회의의 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의장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도 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, 위촉

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대학·산업체·연구기관 등의 인사

2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, 서기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⑥ 제2조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협의회 회의)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④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판단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협의회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
2.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의견 청취 등)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3조에 따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“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·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)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, 선발비율, 선발방법 등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)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(이하 이 조에서 “기업”이라 한다)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,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
2.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·시행하는 경우
3.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

제19조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·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학·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